

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경 상 북 도 의 회
(박영서 의원 외15명)

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영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.

발 의 자 : 박영서 · 박현국 · 김희수
황병직 · 김시환 · 김영선
박권현 · 이재도 · 김상현
정영길 · 이춘우 · 박용선
남진복 · 도기욱 · 윤승오
김하수 의원 (16명)

찬 성 자 : - 명

1. 제정이유

-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및 공공구매기관 협의회를 통한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·용역·소모성 자재 및 공사의 수주 확대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- 나.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경상북도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관련법령 : 붙임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 : 붙임
- 규제심사 : 붙임
- 부패영향평가 : 붙임
- 해당부서 검토의견 : 붙임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붙임

6. 참고사항

-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 명부

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·용역·소모성 자재 및 공사(이하 “중소기업제품”이라 한다)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가 설립한 공사·공단과 출자·출연하여 설립한 기관(이하 “출연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.

제4조(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)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)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·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
2. 중소기업의 전시회·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
3.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
4.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
5.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(위탁)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·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)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
2.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
3.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
4.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·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관련 경상북도 국장으로 하고, 경상북도 및 시·군 공공구매 담당과장과 함께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1. 경상북도 출연기관등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

2.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원

3.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

4.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

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9조(포상)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「경상북도 포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구매 증대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·용역 및 공사(이하 “제품”이라 한다)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(受注)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(제6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5조(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,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,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7조(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·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□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 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,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일비 및 여비(이하 “실비변상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경상북도 포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 경상북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관련부서 협의

1 법제심사 (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)

실·과	주요내용(조항)	검 토 의 견
법무담당관	-의견없음-	

2 규제심사 (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)

○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3 부패영향평가 (감사관)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 치 법 규 명	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		
평 가 담 당	감사관실	직 급 성 명	행정7급 김 덕 환
입안주무부서	정책기획관	통 보 (조 치) 일	2018. 11. 12.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	조 치 사 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. 		

평가항목별 검토자료

□ 「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체크리스트 (종합)

평가분야	평가항목	해당 여부	응답내용	첨부사항
준수	준수부담의 적정성	X	① 적정	해당없음
			② 높음	
	제재규정의 적정성	X	① 적당	해당없음
			② 약함	
			③ 강함	
	특혜발생 가능성	X	① 없음	해당없음
② 있음				
집행	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	X	① 구체적·객관적	해당없음
			② 추상적·주관적	
	위탁대행의 투명성·책임성	X	① 적정	해당없음
			② 부적정	
	재정누수 가능성	X	① 명확	해당없음
			② 불명확	
행정절차	접근의 용이성	X	① 있음	해당없음
			② 없음	
	공개성	X	① 예측가능	해당없음.
			② 예측곤란	
	예측가능성	X	① 없음	해당없음.
			② 있음	
부패통제	이해충돌 가능성	X	① 없음	해당없음.
			② 있음	
	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	X	① 없음	해당없음.
			② 있음	

4

해당부서 검토의견 (중소기업벤처과)

실·과	주요내용(조항)	검 토 의 견
중소벤처기업과	<기타의견>	-의견없음-

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조례안 제5조(사업)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조례안 제6조(위탁)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·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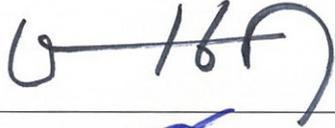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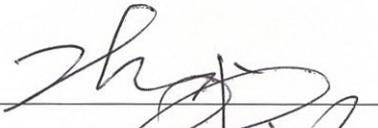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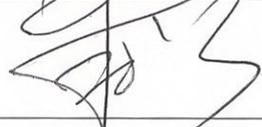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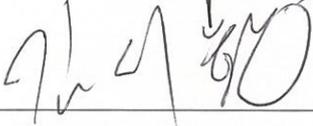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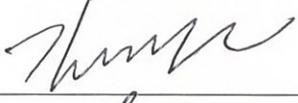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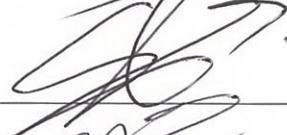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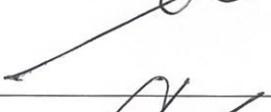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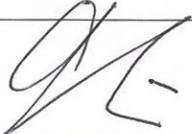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, 향후 지원사업의 대상·규모 및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요 사업비 판단이 곤란하고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- 중소벤처기업과 지방공업주사보 안주홍 (054-880-268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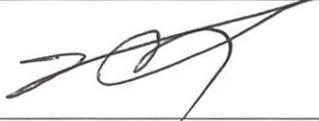
발의의원 서명명부

(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)

의원명	서명	비고
박 영서		
박 현국		
김 리우		
김 병직		
김 사현		
김 영선		
박 권현		
이 재도		
김 상현		
김 병길		
이 정우		
박 용선		

발의의원 서명명부

(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)

의원명	서명	비고
신진욱		
노기욱	노기욱	
신정은		
김하수		